

“승객 줄었는데 사납금 올린다고?” 택시기사들 반발

광주 택시업체들, 작년 7000원→올해 3만2000원 대폭 인상 예고 기사들 “수입 감소로 생계 위협”...광주시는 “노사문제 관여 안해”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이 최근 광주지역 택시요금에 인상됨에 따라 일명 ‘사납금’을 3만원 이상 올리겠다고 밝혀 법인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어 수입은 그대로인데 사납금을 올리면 코로 나가 기세를 부리던 지난해처럼 운전대를 놓고 대리기사나 배달·택배 운전 등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택시 광주본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조합은 노조에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액)을 기존 금액에서 3만 2000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기준액은 지난 2019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신설됐다.

전액 관리제가 도입되면서 택시 기사들의 수입 구조는 매출액을 사측에 전액 지불하면 사측이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정급여는 기사 사측에 납부한 하루 매출액의 49%(야간수당·근속수당 포함)다.

기준액은 성과급에서 적용된다. 기준액은 단일운전 기사(2인차)의 경우 하루 16만 4500원이고 전일운전(1인차) 기사는 19만 9000원이다.

하루 수입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성과급’ 형태로 기사에게 제공되는데 사측이 초과 금액의 40%를, 기사가 60%를 가져간다.

하루 수입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할 경우 고정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여서 택시기사들은 기존 사납금 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난 7월 1일 광주지역 택시요금에 오르면서(3300원~4300원) 이 기준액을 상향하겠다고 조합이 공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 등을 토대로 기준액을 3만 2000원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물가와 기름값이 오르면서 회사들도 기름값도 내지 못한 만큼 힘든 상황이라 기준액 상향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인택시기사들은 ‘요금에 오르면서 오히려 승객이 줄어들었는데 기준액을 큰폭으로 올리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달 기준 25일 가량 근무하는 기사들은 기준액을 3만 2000원으로 인상하면 한달수익이 80만원이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난 한모(50)씨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기사들의 수입도 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승객이 줄어들어 수입은 줄었다”며 “기준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25년째 하고 있는 택시기사 일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만난 김모(63)씨도 “택시승강장에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회전율이 예전같지 않다”며 “하루에 기준액(19만 9000원)만큼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할수록 적자”라고 호소했다.

조합과 노조는 11일 8번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준액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 노조는 요금 인상과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기준액 인상 마지노선으로 1만 2000원이 한계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에도 기준액이 7000원 인상



택시노조와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측이 운송수입금 인상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요금 미터기를 교체하는 택시 운전자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됐다”며 “하루 12시간 일해도 최저임금도 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다.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는 “택시는 공공수단일 뿐 버스·기차·비행기 등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민 김모(55)씨는 “택시 요금 인상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인상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법인택시종사자는 2019년에는 3583명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과 모임 임원이 제한되면서 택시기사들은 대거 일자리를 떠났고 올해 8월 기준 956명 감소해 2627명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5·18공법단체, 광주시장 고소 잇따라 취소

부상자회 전 간부 “광주 시민사회와 더 이상 갈등 원하지 않아”

5·18공법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에 대한 고소를 잇따라 취하했다.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와 공로자회 임원 B씨 등 2명은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 시장이 지난 5월 17일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5·18 단체 현수막을 철거하고, 현수막을 5·18 부상자회 회원들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다며 소장을 냈었다.

A씨 등은 최근 두 공법단체가 강 시장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던 건도 취하했다. 두 공법단체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5·18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 공정성을 해쳤다고 고소장을 냈다.

A·B씨는 고소 당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에

서 권한을 위임받아 개인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취하 권한도 위임장에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 회장이 고소장 내용을 모두 쓰고 나는 이름만 써서 경찰에 제출한 것 뿐이었다”며 “5·18부상자회 회원들은 황 회장의 독단적인 행보에 문제가 있고 광주 시민사회와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고소 취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광주일보도 황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상해, 직권남용은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5·18부상자회가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건을 취하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연태 기자 yjyou@kwangju.co.kr

죽 급하게 떠먹여 고령 환자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응급상황 대비 안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고령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30분께 화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이면서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 음식물에 의해 기도 가 막혀 숨졌다.

B씨는 치아를 상실한데다 삼킴장애(입, 식도 등의 기능감소로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있어 묽은 죽을 먹는데도 한 숟가락 당 평균 55초

씩 걸렸으며 30여분 동안 식사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A씨는 사건 당시 1분 20초 동안 5차례 B씨에게 죽을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가에 흘러내린 죽을 입안에 넣어 주었을 뿐 급하게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으로 A씨가 죽을 떠먹여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가 끝까지 음식물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요양원이 가입한 책임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개발사업 자료 인터넷 확인 안내

열람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조합장에 벌금 50만원 선고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열람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A(5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조합원 B씨가 조합측에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에 상세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 동구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인 B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인 A씨에게 2021~2022년까지 조합운영비 지출내역과 조합 상근자의 급여·상여금·퇴직금 지출내역 등을 요구했다.

조합장 A씨는 도시정비법상 상근자 급여·상여금·퇴직금 지출내역은 열람 대상이 아니고 월별 지출내역은 조합 인터넷 카페에 공개돼 있다고 안내한 점 등을 이유로 공개 거부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는 공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서류와 그 상세내역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열람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